

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|
| 의안 번호 | |
|----------|--|

제출년월일 : 2009. 6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마포구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위해 조성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, 개정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의 내용을 반영하고,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기금출납원을 변경 지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법제명 변경

종전의 「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」라는 법제명을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로 변경

나. 근거법 조항 변경 (안 제1조)

종전의 설치근거였던 법 조항인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44조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41조를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18조의3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26조의 2로 변경

다.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변경 (안 제5조제2항제3항)

종전의 “사회복지위원회”로 되어 있었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“

지역사회복지협의체”로 변경

라. 기금출납원 변경 (안 제12조제2항)

종전의 기금출납원으로 지정되었던 “생활보장팀장”을 “자활고용지원팀장”으로 변경

마. 법령 띄어쓰기 및 법률용어 순화 등을 반영

3. 개정근거

(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8조의3(자활기금의 적립)

(2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26조의2(자활기금의 설치)

4. 조례안 : 따로붙임

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(2009. 5. 15 ~ 2009. 6. 3)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나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09. 6. 4)

다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8조의3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 그 관리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서울특별시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 다음에 제2호의2와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”을 “영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, “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로 한다.

2.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

2의2.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 자활을 위한 사업 자금 융자

2의3.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

제4조제3항제2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심의위원회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위원회의 구성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」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대신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등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」의 규정에 따른다.

제6조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, 제3호 및 제5호 중 “의 규정에 의한”을 각각 “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」 제31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영 제9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제7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6조에 따른”으로, “제3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3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 및 제2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및 제4항제3호 중 “의 규정에 의한”을 각각 “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의 규정에 의한”을 각각 “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,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한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신용보증) 제3조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, “생활보장팀장”을 “자활고용지원팀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지방재정법”을 “「지방재정법」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, “서울특별시마포구재무회계규칙”을 “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-|
| <p>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및운영조례</p> | <p>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</p> |
| <p>제1조(목적)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4 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(이 하 "영"이라 한다) 제41조의 규정 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 활보장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 을 설치하고 그 관리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기초생 활 보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8조의3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2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 그 관리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|
| <p>제2조(기금의 조성)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1. 서울특별시마포구(이하 "구"라 한다) 일반회계 출연금 2.~6. (생략)</p> | <p>제2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1.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"구"라 한다) 일반회계 출연금 2.~6.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3조(기금의 용도)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. (생략) 2.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 여</p> | <p>제3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. (현행과 같음) 2.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 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2의2.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</p> |
| <p><신설></p> | |

〈신 설〉

3.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

4.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

가.~나. (생략)

5. (생략)

6. 기타 저소득주민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인정하는 사업

제4조(기금의 관리·운동)

①~② (생략)

③ (생략)

1. (생략)

2.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등

제5조(기금운동심의위원회) ① 기금의 관리·운동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

자활공동체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융자

2의3.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

3. 영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

4.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

가.~나. (현행과 같음)

5. (현행과 같음)

6. 그 밖에 저소득주민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인정하는 사업

제4조(기금의 관리·운동)

①~②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1. (현행과 같음)

2.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등

제5조(기금운동심의위원회) ① 기금의 관리·운동에 관한 다음 사항을

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1.~4. (생략)

②위원회의 구성은 서울특별시마포구 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복지위원회로 대신한다.

③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등은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.

제6조(지원대상)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구에 소재하는 기관·단체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
2.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
3.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
4.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

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1.~4. (현행과 같음)

② 위원회의 구성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」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대신한다.

③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등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」의 규정에 따른다.

제6조(지원대상)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구에 소재하는 기관·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
2. 법 제18조 및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」 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
3.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
4.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

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

5.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중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·기관·단체

제7조(지원신청 등)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, 기관, 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변경신청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8조(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)

①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,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.

②~③ (생략)

④ (생략)

1.~2. (생략)

3.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

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

5. 제3조제6호에 따른 사업 중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·기관·단체

제7조(지원신청 등) ① 제6조에 따른 개인, 기관, 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변경신청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8조(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)

① 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,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.

②~③ (현행과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

1.~2. (현행과 같음)

3.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

| | |
|--|--|
| <p>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</p> | <p>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</p> |
| <p>제9조(이차보전)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이자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.</p> <p>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p> | <p>제9조(이차보전)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이자와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자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.</p> <p>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p> |
| <p>제10조(신용보증)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.</p> | <p>제10조(신용보증) 제3조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.</p> |
| <p>제11조(업무의 위탁)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| <p>제11조(업무의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|

제12조(기금관리공무원)① (생략)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국장으로서 하고, 기금출납원은 생활보장팀장으로 한다.

③ (생략)

④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,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.

제13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

① (생략)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~2. (생략)

3. 기타 구청장이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4조(관계규정의 준용)

① (생략)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외의 기금

제12조(기금관리공무원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국장으로서 하고, 기금출납원은 자활고용지원팀장으로 한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「지방재정법」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,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.

제13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~2. (현행과 같음)

3.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4조(관계규정의 준용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에 따른 이외의 기금의 관

| | |
|---|---|
| <p>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<u>서울특별시 마포구재무회계규칙</u>을 준용한다.</p> | <p>리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</p> |
|---|---|